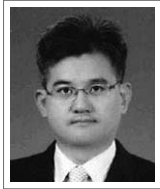




제18대 국회에서의 물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요약



이 기 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leegiha@assembly.go.kr



김 상 옥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sukim70@kangwon.ac.kr

1. 들어가며

제18대 국회가 2012년 5월 29일부터 임기만료되고, 5월 30일부터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제18대 국회에 관한 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의 물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해당 정보를 독자께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물관리 기본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물 관련 법률안의 입법이 많았다.

물을 전공하는 독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 관련 법률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도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물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범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소관 부처의 물관련 법·제도 및 정책사항을 요약·정리하면 좋겠지만, 국회 임기동안 너무 많은 법률안이 정부제출 또는 의원

발의 되기 때문에 모든 법률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을 요약범위로 한정하였다.

요약의 대상이 되는 법령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법률의 개수만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하천, 지하수 및 댐 및 하천 주변 토지의 계획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천법」은 9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 부서는 하천계획과이지만 이외의 다양한 부서의 업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의 법률이 규정할 수 있는 범위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표 1.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소속 부서들의 소관법령 현황

법률	대통령령	국토해양부령	소관 부서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자원정책과
「한국수자원공사법」	동법시행령	-	수자원정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수자원개발과
「하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하천계획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	하천운영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친수공간과

2. 물 관련 법률안 현황

앞에서 제시한 6개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 사항



표 2.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의 입법현황 (제18대 국회 기준)

법률안 명칭	대표발의 의원	의결 결과	발의 및 제출건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임기만료폐기	15
	위원장	원안가결	
	윤영	폐기	
	위원장	원안가결	
	박민식	폐기	
	김효석	폐기	
	박순자	대안반영폐기	
	안홍준	대안반영폐기	
	정부	대안반영폐기	
	노영민	대안반영폐기	
	윤영	대안반영폐기	
	진수희	대안반영폐기	
	김성순	대안반영폐기	
정부	대안반영폐기		
홍준표	철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임기만료폐기	5
	이명수	임기만료폐기	
	이혜훈	임기만료폐기	
	이시종	철회	
	박기춘	수정가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원안가결	12
	정부	대안반영폐기	
	정부	수정가결	
	장윤석	대안반영폐기	
	이시종	철회	
	이달곤	임기만료폐기	
	진수희	폐기	
	정부	원안가결	
	홍준표	철회	
	정병국	임기만료폐기	
	송광호	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	임기만료폐기	18
	전현희	임기만료폐기	
	최규성	임기만료폐기	
	김희철	폐기	
	김성태	임기만료폐기	
	김기현	수정가결	
	주승용	임기만료폐기	
	김우남	임기만료폐기	
	강기갑	임기만료폐기	
	정부	임기만료폐기	
	윤영	폐기	
김성순	폐기		
황진하	폐기		

표 2.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의 입법현황 (제18대 국회 기준)(계속)

법률안 명칭	대표발의 의원	의결 결과	발의 및 제출건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임기만료폐기	
	김성곤	폐기	
	이진삼	폐기	
	이진삼	철회	
	유기준	폐기	
	정부	수정가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기춘	수정가결	제정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백성운	원안가결	제정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최규성 권선택	임기만료폐기	제정법률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강기갑	임기만료폐기	제정법률
「물관리 기본법안」	이병석	임기만료폐기	제정법률
	이윤성	임기만료폐기	
	김소남	임기만료폐기	

을 정리한 결과, 제18대 국회에서 입법된 수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 8건, 일부개정법률안 50건으로 모두 58개의 법률안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거나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다(〈표 2〉 참조).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은 대부분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대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가결된 것으로 본다면, 58개 법률안 중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안은 20건이다. 발의 건수로 본다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결된 내용의 비중으로 본다면 「지하수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많았다.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률안은 모두 21건으로 전체 법률안의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물 관련 종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던 「물관리 기본법」은 제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3. 가결된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

이 절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일부개정된 물관련 법률 8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요약하였다. 제정법률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단편적인 요약보다는 의안 전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어 별도의 요약은 하지 않았다. 모든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확인할 수 있다.

(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진수희, 김성순, 운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정부제출안을 통합하여 국토해양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2011년 5월 3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벌규정에 대한 면제조항 신설(제38조 단서조항 신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의 정비(제41조 개정)
- 지하수 개발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차액보전(제33조제2항 신설)
-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에 있어 중복 및 불필요한 준공검사 제도 폐지(구법 제7조제5항 삭제)
-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에 대한 불일치 해소(제14조제1항 개정)

(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노영민, 안홍준, 박순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국토해양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댐 및 지하수 한양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제9조의6 신설)
-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개발과 이용 및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7 신설)
- 국가지하수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을 통한 수위 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정밀조사를 통해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10조제8호의2 신설)

(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2009년 3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되, 무분별한 사업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수자원개발 및 수도시설 부지 등으로 한정함(제9조제5의2호 신설)
- 공사의 해외진출 근거 마련(제9조제2항)
- 연도별 사업계획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 명시(제38조 각호 신설)
- 인가 및 허가외제 조항의 정비(제18조 개정)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장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국토해양위원장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9조제3항 개정)
-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인허가 의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킴(제9조의2 신설)
-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저수용량 기준에 따라 300억 원(2,000만㎡~15,000㎡)과 400억 원(15,000㎡ 이상)으로 함(제42조제1항 개정)
-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함(제53조제2항)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2011년 5월 3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을 신설(제23조의2 신설)
- 국가나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 2 신설)

· 기타 문구의 조정 등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부과되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로 전환하고, 양벌규정에 대한 면제조항을 마련하였다.

(7)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12년 1월 17일부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하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범위를 제방, 저수로, 보 및 관련 연계시설로 개정함(제27조제5항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하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추가함(제92조제3항제6의2호 신설)

(8)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2009년 4월 1일부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하천관리를 위한 토지의 출입과 관련된 벌칙조항에 대한 정비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12년 7월 22일부로 시행예정이며,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규성, 권선택 의원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수변구역 개발에 반대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대규모 가뭄, 홍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역시 104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법·제도 체계

의 정비와 병행하여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물관리기본법안」은 그 필요성 및 취지, 법률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과 그 실효성 논란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물관리기본법안」을 비롯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자원관리 체계의 개편, 수리권 문제 등 법·제도적 개선사항, 21세기 블루골드 사업으로 떠오른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은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물관리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